

NO.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4	-	-	-	주의

【제 목】 계약 이행 및 선금 지급 보증에 관한 사항

1. 근 거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제108호, 2012.9.22) 제35조(채권 확보)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제39조(선금 지급조건)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에 제35조 내지 제38조에 의한 채권 확보 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 청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선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진입로 개설공사”(계약 금액 58,892천원/ 계약기간 2013.5.3.~2013.8.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연구 교류동 신축 설계용역”(계약 금액 62,396천원/ 계약기간 2013.4.22~2013.8.21) 및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청사 시설 관리 용역”등 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연구 교류동 신축 설계용역”(계약 금액 62,396천원/ 계약기간 2013.4.22~2013.8.21) 사업 및 “부여지역 3차원 정밀 지형 구축 용역”(계약금액 20,800천원/ 용역기간 2013.9.16~2013.10.25) 사업 등 2건에 대한 선금을 지급하면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제108호, 2012.9.22)」 제35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선금 지급에 따른 이행 보증 증권 등 채권 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하나, 이러한 조치 없이 선금을 지급하였음

3. 조치할 사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은 향후 계약업무 수행 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은 “주의”를 촉구함.

NO.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부여문화재 연구소	2014	시 정	-	-	-

【제 목】 하자 담보 책임기간 설정에 따른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

1. 근 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하자검사)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2. 지적 내용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진입로 개설공사" (계약 금액 58,892천원/ 계약기간 2013.5.3~2013.8.2)를 완료하면서 2013.8.14~2015.8.13(2년)까지 하자 책임기간을 설정하였으나, 2014. 3월 현재까지 하자검사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하자검사 또한 미실시 상태에 있음

3. 조치할 사항

국립부여문화재소장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계획 수립 및 하자 검사를 조속히 실시하시기 바라며, 향후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람

NO.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4	통 보(2건)	-	-	-

【제 목】 출토유물 수장고 관리시스템 운용에 관한 사항

1. 현 황

‘14. 3월 현재, (단위 : 점)

구 분	연구소 소장 유물			시스템 등재 유물			미등재 유물			비고
	계	국가 귀속	학술 유물	계	국가 귀속	학술 유물	계	국가 귀속	학술 유물	
수 량	16,541	5,153	11,388	3,518	3,518	-	13,023	1,635	11,388	

※ 학술유물 중 “보고서 미수록 유물”은 제외

2. 지적 내용

출토유물 수장고 관리시스템은 정보화기획팀(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출토유물 관리현황의 전자보고 체계 구축 및 효율적 유물 관리를 위해 2009년에 나주문화재연구소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하고, 2010년에 문화재연구소(본소, 지방연구소)에 확대 추진하였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2010년 4월 22일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가귀속유물 2,749점에 대해 수장고 관리시스템 입력을 위한 목록 작업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출토유물 수장고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시스템의 잦은 오류 및 처리 속도가 떨어진다는 사유 등으로,

‘13. 3월 현재까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16,541점 중 3,518점(21.2%)만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유물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3. 조치할 사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은 체계적인 유물 관리를 위해 소장 유물을 조속히 전산화하여 주시기 바람(통보)

정보화담당관은 소장유물 관리부서(기관)와 협의하여 출토유물수장고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통보)

NO.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조치방법	금액(원)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14	주 의	환 수	11,639,000	-

【제 목】 관사 임차 비용에 관한 사항

1. 근 거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 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편성된 예산은 당초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

2. 지적 내용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14년 3월 현재 총 8개 관사를 임차(전세 1건, 월세 7건)하여 정규직 및 비정규직(무기계약, 연구원) 등이 사용하게 하고 있음

관사 임차 비용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관금(114,000천원)을 활용하여 관사 임차에 필요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부족한 관사 임차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통해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나,

2010년부터 2014년 3월 현재까지 관사 임차비용 지급 현황을 검토한 결과, 기관 역량 강화와 효율적 인적 자원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직원 거주 여건 마련을 사유로, 자체 예산 절감을 통해 2010~2011년은 문화재보호기금의 시험연구비(6175-306-210-13)에서 7회에 걸쳐 23,520천원이 지출하였으며, 2012~2013년은 보관금 및 문화재연구소기본 경비(3118-211-210-01,02,09)에서 세목을 210-07로 변경하여 12회에 걸쳐 44,950천원을 지출하는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11,639천원은 관사 월 임차료로 선지급 되어 있음

3. 조치할 사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은 선지급된 관사 임차료 11,639천원을 환수하여 주시고, 향후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람.